

## 유네스코ESD공식프로젝트인증제운영지침

[시행 2021. 1. 1.] [2020.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규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증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의 국문 번역 용어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을 통칭한다.
2.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공식프로젝트(이하 “공식프로젝트”라 한다)”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기관·단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교육과 사업, 행사, 축제, 기타 활동 중에서 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수한 실천 사례로 인증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0.12.23>
4. “수행기관”이란 공식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부·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인증제 운영)** ① 공식프로젝트 인증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수한 실천 사례로서, 1년 이상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 ② 공식프로젝트 후보는 공개모집하고, 심사평가단의 심사결과를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이하 “ESD한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인증한다. <개정 2020.12.23>
- ③ 삭제 <2020.12.23>
- ④ 인증제 운영 관련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5조(인증 심사)** ① 사무총장은 공식프로젝트 후보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며, 심사평가단 위원은 공식프로젝트 공개모집 시에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1. ESD한국위원회 위원 중 2인
  2. ESD와 관련된 정부·기관·단체·개인 전문가 3인
- ② 심사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인증 신청 서류 심사
  2. 필요 시에 인증 심사와 관련된 현장 방문
  3. 심사결과(“인증”, “반려”로 구분한다)를 포함한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 ESD한국위원회 제출
- ③ 인증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제 적합성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ESD 핵심 가치 반영 정도
  2. 효과성 : 목표 달성도 및 파급 효과 등
  3. 만족도 : 프로젝트 참가자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등
  4. 독창성 : 프로젝트의 창의성 또는 참신성
  5. 포용성 : 취약 지역 또는 계층에 대한 배려 등
- ④ 사무총장은 심사평가단의 요청시 수행기관에 신청서에 대한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첨부한다.

[개정 2020.12.23]

**제6조(심의 및 인증)** ① ESD한국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토대로 공식프로젝트 후보를 심의하여 “인증” 또는 “반려”를 판정한다.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판정을 받은 공식프로젝트에 대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며, 인증일은 인증서 교부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7조(인증마크)** ① 공식프로젝트와 직접 관련된 인쇄물·광고물이나 인터넷 매체 등에 인증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따로 정하며, ESD한국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공식프로젝트와 수행기관은 인증 만료 60일 이내에 사무처에 현판을 반납하거나 제거한 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8조(인증 기간)** ① 공식프로젝트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4>

② 사무총장은 수행기관이 계속 활동 계획서를 구비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을 요청한 때에는 ESD한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연장 심의 이전에 인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연장 인증서 교부 전일까지 인증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공식프로젝트의 수행기관이 기한 내에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ESD한국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인증기간 연장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식프로젝트의 인증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3]

**제9조(활동 보고 등)** ① 수행기관은 인증 기간 동안 1년에 1회 이상 공식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사무처가 공식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10조(인증 취소)** ① 사무총장은 공식프로젝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식프로젝트로 인증 받은 경우

2. 당해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수행기관이 공식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활동이나 수행기관 자체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

4. 인증 기간 동안 프로젝트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제9조에 따른 활동 보고 또는 자료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총장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행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위원회 웹사이트에 관련 사실을 공시하며, 가장 가까운 ESD한국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11조(지원)** 사무처는 공식프로젝트에 대하여 위원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실비의 지급)** 심사평가단 위원에게는 위원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은 ESD한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개정한다.

부칙 <2019.12.19>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3>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